

모바일 OK 인증체계 및 구조

*김성한,*이승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

Certification system and architecture for mobileOK

*Sunghan Kim, *Seung-yun Le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mail: sh-kim@etri.re.kr, syl@etri.re.kr

요약

본 논문은 한국형 모범사례 표준(KMWBP) 및 KMOK(Korean Mobile OK)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웹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인증 체계를 규정한다. 이 인증체계 표준을 통하여 관련된 인증시나리오, 인증프로세스 및 평가항목 선정 등의 규격 등과 상호연계성을 제공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증 체계의 구조, 인증 시스템의 범위, 요구되는 기구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한다. 모바일OK 인증체계 및 구조 표준화를 통하여 모바일 OK 시험 및 인증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며, 아울러 콘텐츠 및 브라우저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웹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다.

1. 개요

본 표준은 국내 KMOK Tests(Korean Mobile OK Tests)과 국내 KMWBP(Korea Mobile Web Best Practice) 1.0의 준수 대상이 되는 모바일 웹의 콘텐츠에 대한 시험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인증 체계에 대해 정의한다. 본 표준은 한국의 "모바일웹 2.0 포럼" 워킹그룹에서 제정하는 한국형 표준 규약에 대해 인증 체계로 활용한다.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의 정의는 인증 문서의 발급을 위한 자체 절차규정과 경영진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즉 인증기관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관련 기구에는 인증기관, 인정기구 및 시험기관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인증기관이란 시험 ·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인정기구에 인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인증기관으로 인정되며, 실지 인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함.
- 인정기구는 인증의 관리 주체로서 직접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시험기관은 해당 분야의 시험 등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인증제도

- 인증제도는 제품, 조직, 서비스 등이 인증기관이 규정한 특정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사후관리 하는 제도로서 인증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특정 규격 또는 표준을 기준으로 공급자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공급자 또는 제품이 특정 규격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고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즉, 상기의 인증 시스템을 갖춘 인증기관이 특정 규격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평가하여 그 공급자가 특정 규격에 적합하다고 보증해주는 제도
- 국제 표준 분야에서의 시험인증제도는 「어떤 제품, 절차(공정) 및 서비스가 특정 표준과 각종 인증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 평가하는 시험(Testing), 인증(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구성으로 정의
- 일반적으로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3rd Party)에 의해 운영되어 최종적으로는 표준 및 관련 인증 요구조건에 적합하면 인증서(Certificate)로 그 사실을 보증해 주는 절차

차로 구성된다고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IEC의 지침 23(제3자 인증제도를 위한 표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방법) 및 지침 28(제품의 제3자 인증제도 모델에 대한 일반적 규정) 등에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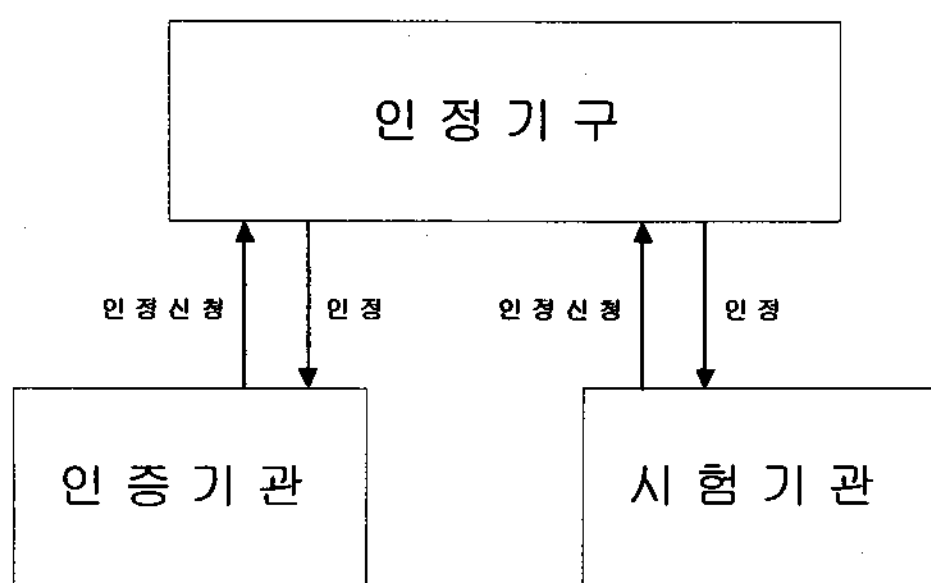
○ 인증제도 방식

- 강제 인증제도: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의 안전, 보건 & 환경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임의 인증제도: 산업표준규격 확산 및 품질향상, 신기술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임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로, 모바일 OK 는 임의인증제도에 해당됨.

2. 인증체계 구조

2.1 시험인증 프레임워크

그림1에서 보이는 시험인증제도 프레임워크는 ISO/IEC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근거한다. 시험인증제도의 주체는 인정기구,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주체간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MOK 인증제도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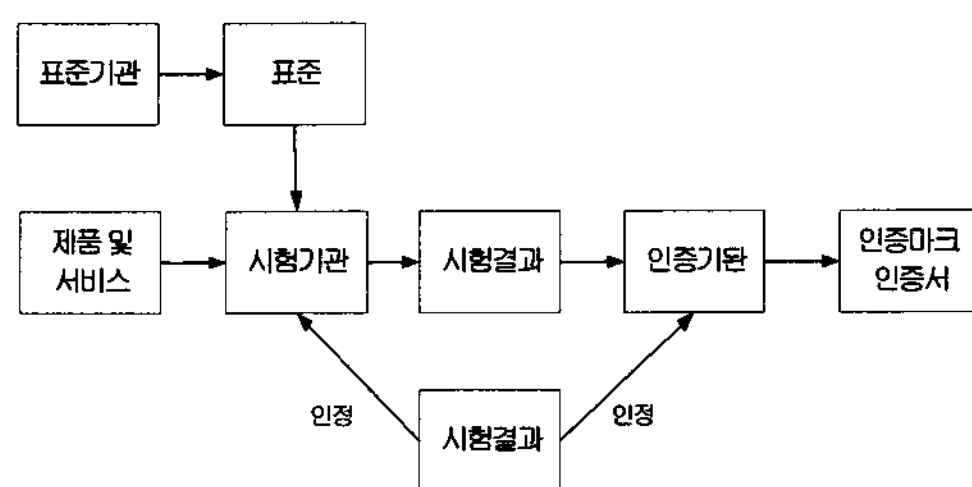
- 인정기구는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대내적으로는 시험 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등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상호인정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성격을 갖는다.
- 인증기관은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에 대한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인정받아, 시험기관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기타의 인증기관이 정하는 요구조건을 근거로 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또한 각종 시험인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보급 활용하는 업무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관은 주로 정부와는 독립적이고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제3자 기관(민간단체, 협회 등)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험기관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아, 해당 표준에 대한 제품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표준에 대한 적절한 시험방법, 시험규격 및 시험도구 등을 개발하여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시험 및 인증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2.2 인증프로세스

인증마크는 인증을 받고자 제출한 제품 및 서비스를 독립된 시험 기관에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시험 결과가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을 평가해서 만족하는 경우 마크를 부여하여 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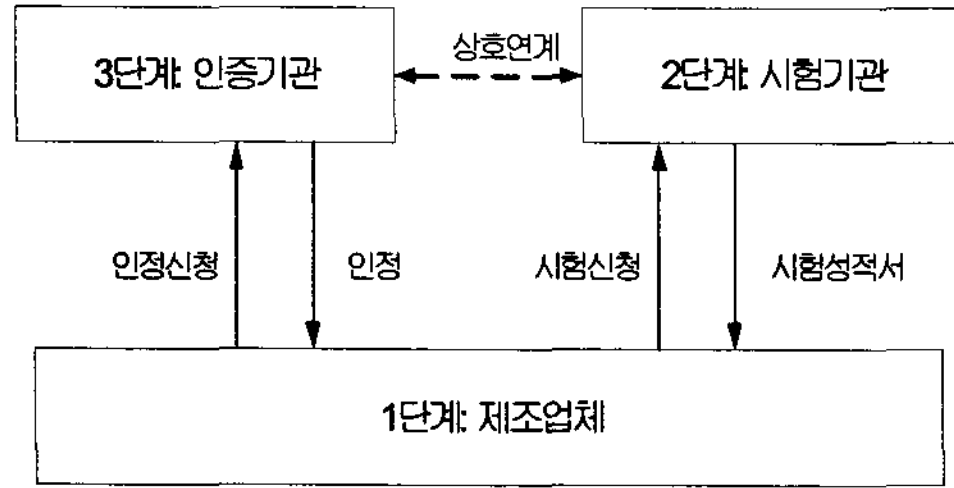


(그림 2) 인증 프로세스

2.3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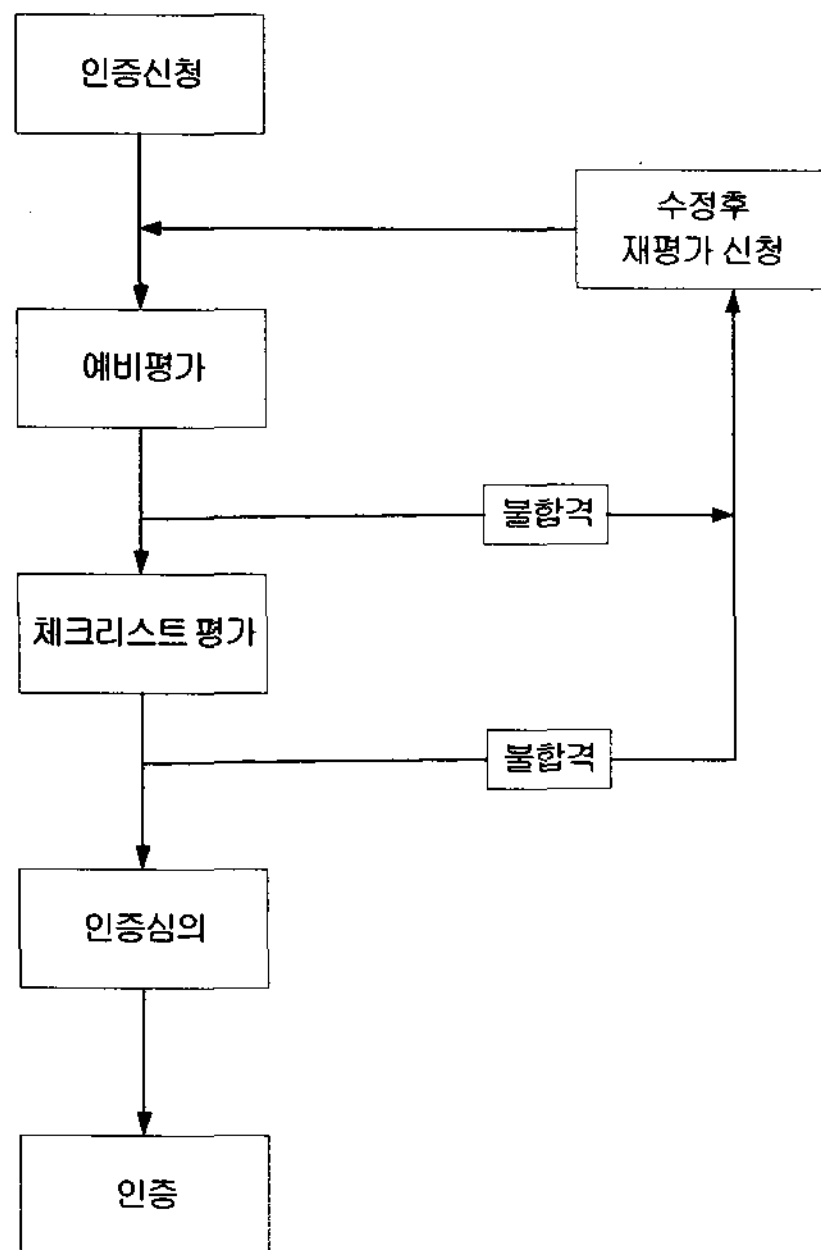
일반적인 시험인증 절차는 또한 그림 3과 같이 인증신청자가 미리 시험기관에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으며, 그 후에 인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예: 시험성적서,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시험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직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과 함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게 되고 인증기관이

직접 혹은 인정기관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 일반적 시험 인증 절차

모바일 OK 인증을 위한 각 단계별 인증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모바일OK 시험 인증 절차

• 인증 신청

- 한국형 모범사례 표준(KMWBP) 및 KMOK(Korean Mobile OK)의 표준 규격에 대한 인증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소정의 신청 양식을 제출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로,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모바일OK 인증 신청 양식 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 예비평가

- 모바일OK 지침을 평가할 수 있는 자동 도구를 사용하여 예비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예비평가란 MOK basic 항목을 의미하며, MOK basic 항목은 향후에 정의함.
- 모바일OK 지침의 자동평가 적용범위를 정한다.

•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아울러, 체크리스트 시에는 MOK basic 항목이외에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함. 세부적인 항목은 추후에 관련 표준 규격이 완성된후에 정의함.
- 아울러, 향후 모바일OK 지침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인증

- 자동도구에 의한 평가 또는 전문가 체크리스트 리뷰 평가의 결과 점수가 미리 정해 놓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 인증 등록 및 인증 마크의 사용 조건

- 인증서에는 인증 부여의 기준이 되는 규격 또는 규범문서와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 및 인정기관명이 명시되도록 한다. 또한 이 인증서가 당해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 발급 되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 인정된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에는 관련 인정기관의 마크를 함께 표시한다. 인증서가 인정된 인증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서에 발행 인정기관의 명칭과 고유의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 한다.
-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본 자료에서는 모바일 웹 환경에서의 인증을

위한 인증 체계 및 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증을 위한 세부적인 인증 절차 및 인증 프로세스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JW3C Proposed Recommendations, "Mobile Web Best Practices 1.0", Nov. 2006. W3C
- [2] Working Draft, "W3C mobileOK Basic Tests 1.0", May., 2007
- [3]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1.0", May 1999.